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12

제출연월일: 2020. 4. 10.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특별휴가일수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나. 가정친화적 근무 여건 강화

1)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안 제24조제1항)

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2일 → 3일

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 5일

2)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안 제24조제11항제2호)

가)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 20일

3) 보육휴가 신설(안 제24조제14항)

가) 대 상: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나) 휴가일수: 특별휴가 연간 3일(둘 이상일 경우 6일) 부여

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6조, 안 제20조제2항 및 제6항,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4조제3항 및 제5항)

1) 연가 분할 사용, 연가일수 공제, 병가 규정, 보건휴가 규정 등

라. 조문 수 축소에 따라 “장(章)” 폐지 후 “조(條)”로 구성(본칙 전체)

마. 인용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등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7조의7, 제7조의11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12714호, 2020. 3. 16.)

라. 입법예고: 2020. 3. 16. ~ 4. 6.(21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동률”을 “행동규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정”을 “친절”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비상근무등)”을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휴일”을 “일직자·숙직자·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토요일, 공휴일”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사고의 방지에”를 “그 밖의 모든사고를 방지하기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을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직, 비상근무 및 당직수당에 관하여”를 “당직 및 비상근무에”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사람”을 “공무원”으로, “본직기관”을 “원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을 “공무원”으로, “해당하게 된 때”를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본직기관”을 “원 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주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관에서”를 “기관에”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사람”을 각각 “공무원”으로, 같은 항 중 “해당하게 된 때”를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파견근무자의”를 “파견근무자의 원”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것을 제외하고”를 “것 외에”로 한다.

제11조 중 “15일을 한도로”를 “15일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복장등)”을 “(복장 등)”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2장 근 무 시 간”을 삭제한다.

제1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앞에 “제3장 휴 가.”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에 따른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가원의 제출”을 “연가 신청”으로, “때에는 이를”을 “경우에는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① 구청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경조사휴가 외에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얻을”을 “받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얻을”을 “받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 .”를 각각 “재난,”으로, 같은 호 중 “친 . 인척”을 “친척·인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얻을”을 “받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1일을 더 받을 수 있다.

제24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3일

(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한도로 한다)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 앞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삭제한다.

제29조 앞에 “제5장 정 치 운 동”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1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4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별지1

【별표 2】

공직자의 행동규범(제4조제2항 관련)

대민관계	대내관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지2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상기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 략)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동규범----------.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친절----------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삭 제>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비상근무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자·숙직자·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토요일, 공휴일 ------- 그 밖의 모든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

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직, 비상근무 및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9조(겸임근무) ① ---------- 공무원---------- 원 소속기관----------. ----------.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원 소속기관---------- 알려주어야 --.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0조(파견근무) ① ----------기관에 ----------공무원----------.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파견근무자의 원---------- 알려주어야 ---.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것 외에----------.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15일의 범위 안에서 ----------.
제12조(복장등) ①·② (생 략)	제12조(복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2장 근 무 시 간	<삭 제>
<신 설>	제17조의2(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휴 가.	<삭 제>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에 따른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	<삭 제>

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연가 신청---------- 경우에는 이를----------.
⑤ 삭 제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단서신설 2010.9.20.>	<삭 제>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삭 제>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	

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text{12개월-해당연도 휴직기간}}{\text{12개월}} \times \text{해당연도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	<삭 제>	

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경조사휴가 외에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 제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	<삭 제>

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삭 제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 ---------- ---------- ---------- ---------- - 받을------.
⑥ ~ ⑨ 삭 제	
⑩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 ---------- ---------- 5일 이내--- ---------- 받을------.
1. 재난 .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1. 재난, ---------- ---------- ---------- ----------
2. 재난 . 재해발생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설복구 및 친 . 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2. 재난, ---------- ---------- 친척 · 인척 -- ---------- ----------
⑪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⑪ ---------- ---------- 받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2. ---------- - 20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또는 신병교육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⑫ ----------. 다만,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1일을 더 받을 수 있다.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6일을 한도로 한다)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삭 제>
제5장 정 치 운 동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4조제2항 관련)

대민관계	대내관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 정 안

【별표 2】

공직자의 행동규범(제4조제2항 관련)

대민관계	대내관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상기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근 거 법 규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 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특별휴가일수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 행정자치과

○ 직　급 : 지방행정주사보

○ 이　름 : 강영호

○ 연락처 : (052)290-3163